

## 고 발 장

**고 발 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법인등록번호 110221-001885)

**피고발인** 길고양이 살상과 동물을 보살피는 시민을 위협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 독극물로 추정되는 물질을 살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부  
착한 신원 미상자

##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신원미상자)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 죄 사 실

피고발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00 건물 뒤편에서 시민의 보살핌을 받는 길고양이들의 먹이 및 주  
변에 초산 또는 염산과 길고양이 살상에 사용되곤 하는 클로르칼키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독극물을 살포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이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하는 시민에게 모욕과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 고 발 이 유

### 1. 피고발인의 동물학대행위

가. 신원미상자인 피고발인은 2015년 11월 12일 상기 길고양이 급식장소에 쥐약과 기타 유해물질을 대량 살포하였고 동년 12월 23일에는 협박성 경고를 부착했습니다.

나. 이에 오랫동안 길고양이를 보살피던 시민(이하 제보자)이 대화로 해결하고자 전화번호를 메모로 남겼고 이어 그 메모를 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전화번호 010-54\*\*-\*\*\*4).

다. 전화를 걸어 온 자는 길고양이 밥 주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였고, 제보자는 2013년 3월부터 발생한 4회에 걸친 독극물 살포와 2015년 12월 발생한 협박 문구 부착이 이 자의 소행이라는 판단 하에 다시금 전화를 걸어 항의 및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대화를 통한 해결에 실패했습니다.

라. 이후 2016년 1. 11일 길고양이 먹이 주는 장소의 기물이 이동되고, 17일에는 기물이 아예 사라지고 먹이 주는 장소에 식초 냄새가 진동했으며, 급기야 19일에는 식초냄새와 함께 무엇인지 모를 끈적한 액체(액체에 신발이 닿자 신발 밑창이 녹음)가 살포되었고, “자신

이 염산을 뿌렸다”는 내용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동물과 사람에 대한 저주가 적힌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마. 이런 사건의 가운데서도 제보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신원(전화번호)을 공개하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살포되기 이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여러차례 문자와 전화를 시도하여 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으며, 제보자는 오랜 전부터 이 지역 주민들 및 건물 관리인의 허용 하에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중성화 수술을 시행해 왔습니다.

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의 수위가 높아지고 더 이상 본인 및 동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자 할 수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112), 이어 동물단체에도 제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 고양이는 그 특성상 자신의 영역 내, 항상 먹이를 급여 받던 곳에서 급식을 하고 그루밍을 통해 상처나 몸을 손질하면서 발바닥이나 털에 묻은 독극물은 결국 고양이가 먹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곳에 독극물을 살포한 행위는 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일 확실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원불상자가 남긴 메모내용 “쳐먹어도 죽지는 않아, 다만 밟으면 발바닥이 좀 벗겨지겠지? 많이 아플거야. 이렇게 경고해도 다음번에 니가 또 밥주면 그때 진한걸로 해야겠지?”에서도 여실히 확인됩니다.

## 2. 예상되는 피고발인의 변소내용

가. 피고발인인 신원불상자는 자신이 이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길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이 아니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서 그곳에 일부러 들어가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자는 최초 제보자가 연락처를 적어놓은 메모를 보고 전화를 해 온 자(전화번호 010-54\*\*-\*\*\*\*4) 일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 피고인 신원불상자는 길고양이를 살해하거나 살상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밥자리를 옮기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그렇다면 여러차례 전화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시도한 제보자와의 만남이나 대화를 피할 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 또한 피고인 신원불상자는 길고양이 급식으로 인해 자신이 지옥과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으나 이곳 다른 주민분들이나 건물관리인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불편을 호소해 오지 않고 있어 신원불상자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로 입증되기 전에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 3. 피고발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가. 피고발인의 행위는 동물을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

르게 하는 행위로서 동물에게 고통을 줌은 물론, 제보자에게도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하였으며, 불쌍한 동물을 보살피려는 제보자의 마음을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동물을 인질삼아 정신적 학대행위를 만끽한 사람과 동물에 모두에 대한 학대행위입니다.

나. 아무리 행인의 왕래가 적은 지역이라고 하여도, 위험한 독극물을 건물 외부에 일부러 살포하는 행위는 동물학대행위임은 물론, 인명의 피해마저 배제할 수 없고, 환경에도 위해를 가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일 것입니다.

다. 더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매우 폭력적 고압적임은 물론 타인에 대한 비상식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어, 이런 자가 위험한 독극물을 자신이 싫어하거나 갈등 관계에 있는 타인이나 공공장소에 살포할 위험성마저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형편이기에 이와 같은 신원불상자의 행위는 동물학대를 넘어 사람에게 대한 폭행, 상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바, 반드시 엄한 처벌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는 동시에 더 큰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발자 신원불상자(들)을 철저한 조사과정을 거쳐 반드시 색출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